

2026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모범장수기업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26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울산에 소재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에서 20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 기준(분류코드 C)

** 지식서비스업 :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지식서비스업 **【붙임 4】**

< 선정제외 기업 >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 2024년 주요제품(서비스)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율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 ❖ 임금체불, 법률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지정 및 졸업, 취소기업(2021년~2025년) 등

2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 19. ~ 3. 12., 18:00까지 ※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진흥원 2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방문 전 담당자 연락 후 접수 요망.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전자우편 : biz@ubpi.or.kr ※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제외
 - 2026년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 1) 1부
 - 정보활용동의서(서식 2) 1부
 - 모범장수기업 평가자료(서식 3) 1부
 - 기업소개서(서식 4) 1부
 - 첨부서류 ※ [서식 1]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하단 참조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052-283-7131)

3

평가 및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3. 17. ~ 3. 24.
- 평가기준 ※ 동점자 발생 시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기여도 순으로 선발

구분	정량지표(80)				정성지표(20)		
	업력	지역경제 기여도	건실성	혁신성 및 핵심역량	근무 여건	발전 가능성	사회적 가치 실현
총점	25	20	15	10	10	10	10

- ◆ 지역경제 기여도 : 장기고용유지, 사회적 책임 실천
- ◆ 건실성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 ◆ 혁신성 :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혁신 노력
- ◆ 핵심역량 : 핵심 제품·기술 보유, 市 및 정부의 인증 취득 실적
- ◆ 근무여건 : 직원 복리후생 실천
- ◆ 발전가능성 : 경영역량, 평판 등 사업의 발전 가능성
- ◆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속 경영을 위한 활동 및 계획
- 최종평가(대면) 및 선정(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 3월말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
- 지정서(현판) 교부 : 4월 중 교부

4

모범장수기업 지원사항

○ 직접지원

- 모범장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수요 맞춤형 지원(부가제 지원제외)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비고
경영지원	· 세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업당 8백만원 한도
애로기술 지원	· 신사업 발굴 및 업종 전환 컨설팅	
홍보지원	· 기업 CI, 제품 BI 개발 등	

○ 연계지원

기관명(부서명)	지 원 시 책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향토기업 사랑캠페인 제작 및 송출 지원 ○ 모범장수기업 상표 활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보전 금리 0.5% - 자금추천 최대 6억원(1회)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우수제품 전시 우선권 부여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3년) 적용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별 수출패키지 지원 ○ 해외 판로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1회 추가)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선정 시 우대(5점) ○ 지역기업 비대면 판로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3점) ○ 공공조달제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5점)
SGI서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계약, 차액, 선금급, 하자 등) 보증보험료 10% 할인 ○ 최대 30억원 보증한도 확대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경영대회 참가 시 분임조 활동 컨설팅비(20%) 할인 지원 ○ 한국표준협회 회원가입 우대(입회비 감면, 20만원) ○ 으뜸마크 인증(3점), 로하스 인증(30점) 신청 시 우대
한국평가데이터 (KOD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평가 비용 및 크레탑(CRETOP) 플러스 이용료(30%) 할인 ○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료(35%) 할인 ○ 한국평가데이터 신용관리서비스 및 신용조사(30%) 할인

- 지정 변동 : 지정서 재교부 신청(지정서 원본 첨부) ⇒ 재교부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울산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 시(동일성유지)
- 지정 취소 : 해당 구·군 및 해당 기업에 취소사실 통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타 시·도 공장이전 기업
 - 업종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종료 기업 : 해당 기업에 인증기간 종료사실 통보
 -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업체(지정일 경과 분기 말에 종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실태조사 : 매년 모범장수기업 선정 업체의 가동 및 운영실태 파악
 - 조사결과 지정 변동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시 조치

- 붙임 1. 신청서식[서식 1~5 참가신청서 등]
 2. 평가기준표 1부
 3. 심사평가 설명자료 1부
 4. 지식서비스업 중 지원대상 업종 1부. 끝.

붙임 1

신청서식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발급처	비 고
1	[서식 1]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2	[서식 2] 정보활동 동의서		
3	[서식 3] 모범장수기업 사전 진단표		
4	[서식 4] 기업소개서		5매 이하
5	[서식 5] 정성지표 서식		
6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청 홈텍스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공장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공장등록증명원 (정부24)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기업 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국세청홈텍스) 지방세(정부24)	공고일 이후 발급분
9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22~'24년(3개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 홈텍스	공고일 이후 발급분(최근 3년, 각 1부)
11	'23~'25년(3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2월 귀속분) 각 1부	국세청 홈텍스	공고일 이후 발급분(최근 3년, 각 1부)
12	기타 관련 증빙자료 (심사평가표 참조)		해당기업 제출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식 3】모범장수기업 사전 진단표(직인날인 필수)

모범장수기업 사전 진단표

구 분		연 도			증빙 자료
		2024년	2023년	2022년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매출액				예) 표준손익계산서 OO페이지 *페이지표시
	당기순이익				
	총자산				예) 표준대차대조표 OO페이지 *페이지표시
	자본총계				
	부채총계				
	연구개발비*				예) 표준대차대조표 OO페이지 *연구개발비: 아래 금액의 합 1. 표준대차대조표의 개발비 2. 표준손익계산서의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 3. 제조원가명세서의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
근로자 현황	상시근로자수 (연도 말)	연도 2025 2024 2023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OO페이지
	지역(울산) 근로자수	()명			
지역경제 기여 (사회적 책임 실천)		()건			평가기준표 참고
근무여건 (직원 복리후생)		()건			평가기준표 참고
핵심제품·기술보유		()건			평가기준표 참고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4】기업소개서

기업소개서

회 사 명	
회사 현황	<input type="checkbox"/> 회사현황(회사개요, 사업추진경과, 회사연혁, 대표자 이력사항, 임원 및 주요 경영진 현황 등)
제품 및 기술현황	<input type="checkbox"/> 주요 제품 현황(제품 개요, 규격 및 사양, 특성, 기술성, 가격 등)
사업현황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현황, 공장설립계획 시설투자계획, 제품 생산계획, 마케팅 전략 및 판매 계획, 조직 및 인원계획 등

※ 서식 구매 없이 자유롭게 작성, 작성 페이지 5매 이하

【서식 5】정성지표 서식

1. 장기간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및 경영 철학(10점)

-
-
-

2. 지역사회·지역경제 및 지속가능성 추진 노력 (10점)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 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법인변경 등 사항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의 개업일을 기재합니다.
- 업종은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실제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며, 전업률 30%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매출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당기순이익 등은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되, 백만원 이하는 절사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각 연도말(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 지역근로자 고용율은 '25년 12월 울산지역 근로자*의 수를 '25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 지역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② 모범장수기업 평가 자료

- 평가자료는 [붙임]의 평가기준표와 심사평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기재하며, 각 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재무현황>의 각 자료는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백만원단위로 작성하되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며, 증빙자료란에 증빙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기재합니다.
- <근로자현황>의 지역근로자수는 '25년 12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거주지가 울산지역으로 되어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 사회적 책임 실천 내역, 직원 복리후생 내역, 핵심제품·기술보유는 항목별 1건만 인정됩니다.

붙임 2

평가기준표

심사항목		심사지표							
총 점		100점							
		정량평가(80점)							
1. 업력(25)		25점							
①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에서 주된 업종 변경 없이 장기 존속	25	35년 이상		31년~34년		21년~30년		20년	
		25		21~24		15.5~20		15	
2. 지역경제기여도(20)		20점							
①고용인원 최근 3년('23.~'25.) 평균 고용인원	5	100명이상		30명이상~100명미만		10명이상~30명미만			
		5		3		1			
②고용인원 증가(명) ('24년 대비 '25년 고용인원 증가수)	5	10이상	8이상~10미만	6이상~8미만	4이상~6미만	2이상~4미만	1이하		
		5	4	3	2	1	0		
③사회적 책임 실천 사회적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5	5개이상	4개	3개	2개	1개	무		
		5	4	3	2	1	0		
④지역근로자 고용비율(%) 지역주민고용인원/전체종업원*100	5	60이상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20미만		
		5	4	3	2	1	0		
3. 건실성(15)		15점							
①최근 3년('22.~'24.) 평균 매출액(억원)	2.5	55이상	45이상~55미만	35이상~45미만	25이상~35미만	10이상~25미만			
		2.5	2.0	1.5	1.0	0.5			
②최근 3년('22.~'24.)매출액 평균 증가율(%)	2.5	11이상	9이상	7이상	5이상	3이상			
		2.5	2.0	1.5	1.0	0.5			
③최근 3년('22.~'24.)평균 당기순이익(억원)	2.5	4.5이상	3.5이상	2.5이상	1.5이상	0.5이상			
		2.5	2.0	1.5	1.0	0.5			
④최근 3년('22.~'24.)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	2.5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2.5	2.0	1.5	1.0	0.5			
⑤안정성 최근 3년('22.~'24.) 평균 부채비율(%)	5	35미만	35이상~55미만	55이상~75미만	75이상~95미만	95이상~115미만			
		5	4	3	2	1			
4. 혁신성 및 핵심역량(10)		10점							
① 기술(연구)개발 투자비율(%) 최근 3년('22.~'24.)연구개발비*비중 평균 *연구개발비/매출액x100	5	1이상	0.7이상~1미만	0.4이상~0.7미만	0.1이상~0.4미만	0.1미만	없음		
		5	4	3	2	1	0		
②핵심 제품·기술보유 - NEP, NET 기술개발제품 - ISO 관련, 특허 등	5	5개이상	4개	3개	2개	1개	무		
		5	4	3	2	1	0		
5. 근무여건(10)		10점							
①직원복지후생 실천 - 복지시설운영(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운동시설) - 학자금지원, 임직원 자기계발비 지원 - 동호회 등 취미활동 지원 - 유연근무제도, 육아지원제도 - 고충처리센터 운영 - 노동조합(노사협의회)운영 등	10	5개이상	4개	3개	2개	1개	무		
		10	8	6	4	2	0		
		정성평가(20점)							
1. 모범장수기업 선정 부합성 및 사업의 발전 가능성(10)		10점							
① 장기간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및 경영 철학	10	배점100%	배점80%	배점60%	배점40%	배점20%			
		매우적합	적합	보통	다소부족	부족			
		10	8	6	4	2			
2. 사회적가치 실현성(10)		10점							
①지역사회·지역경제 및 지속가능성 추진 노력	10	배점100%	배점80%	배점60%	배점40%	배점20%			
		매우적합	적합	보통	다소부족	부족			
		10	8	6	4	2			

1 업력 평가(25점)

-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울산에서 주된 업종 변경없이 20년 이상 운영한 기간을 고려하여 점수 배분
- 평가기준

• 20년	• 21년~30년 -업력 1년당 0.5점 추가	• 31년~34년 -업력 1년당 1점 추가	• 35년 이상
15점	15.5~20점	21~24점	25점

- 평가방법
 - (업력산정)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의 영업기간을 포함
(※ 단, 개인기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은 경우만 적용)
 - (휴업) 휴업기간은 업력산정에서 제외
 - (업종추가)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봄

2 지역경제기여도 평가(20점)

가. 상시고용(10점)

1) 고용인원(5점)

- 최근 3년('23년~'25년) 각 연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인원 수를 기준으로 고용인원을 계산하여 점수 배분
- 평가기준

• 10명이상~30명미만	• 30명이상~100명미만	• 100명이상
1점	3점	5점

2) 고용인원 증가(5점)

- 각 연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 인원 수 기준으로 '24년 대비 '25년 고용인원 증가 수로 점수 배분
- 평가기준

• 2명이상~4명미만	• 4명이상~6명미만	• 6명이상~8명미만	• 8명이상~10명미만	• 10명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나. 사회적 책임 실천(5점)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중 실천한 항목 수별로 점수 배분
- 평가기준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 평가항목 및 증빙서류

평가항목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서(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기부 참여 실적	• 재무제표 상 '기부금' 또는 기부영수증 100만원 이상 인정 - 기부주체는 기업(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종업원분 불인정)
• 모범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 수상	• 모범 또는 아름다운 납세 수상 인증서(국세청 등)
• 임직원 봉사활동 실적	• 실적자료 증빙 첨부(자원봉사증 발급기준인 총 80시간 경우 인정)
• 보육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 위문 격려,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등	• 실적자료 증빙 첨부

※ 기부,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은 최근 3년('23년 ~ 공고일)분에 한함

다. 지역근로자 고용 비율(5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 근로자* 인원을 전체 종업원으로 나눈 비율을 크기별로 점수 배분
- *울산 내 주소지를 둔 근로자
- 평가기준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50%미만	• 50%이상~60%미만	• 60%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 증빙자료 : 지역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5년 12월 기준)
- 전체종업원은 '25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액 인원수 기준

3

건실성 평가(15점)

가. 성장성(5점)

1) 매출액 규모(2.5점)

- 최근 3년('22년~'24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평균으로 점수 배분
- 평가기준

· 10억원이상~25억원미만	· 25억원이상~35억원미만	· 35억원이상~45억원미만	· 45억원이상~55억원미만	· 55억원이상
0.5점	1점	1.5점	2점	2.5점

2) 매출액 증가율(2.5점)

- 손익계산서의 최근 3년('22년~'24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로 점수 배분
- 매출액 평균 증가율 계산식 : $\{('23\text{년도} + '24\text{년도 매출액 증가율}) \div 2\}$
- 평가기준

· 3%이상	· 5%이상	· 7%이상	· 9%이상	· 11%이상
0.5점	1점	1.5점	2점	2.5점

나. 수익성(5점)

1) 당기순이익(2.5점)

- 손익계산서의 최근 3년('22년~'24년) 당기순이익 평균으로 점수 배분
- 평가기준

· 0.5억원이상	· 1.5억원이상	· 2.5억원이상	· 3.5억원이상	· 4.5억원이상
0.5점	1점	1.5점	2점	2.5점

2) 당기순이익 증가율(2.5점)

- 손익계산서의 최근 3년('22년~'24년)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로 점수 배분
-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 계산식 : $\{('23\text{년도} + '24\text{년도 당기순이익 증가율}) \div 2\}$
- 평가기준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0.5점	1점	1.5점	2점	2.5점

다. 안정성(5점)

- 최근 3년('22년~'24년) 대차대조표의 부채비율 평균으로 점수 배분
 - 부채비율 계산식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평가기준

· 95%이상~115%미만	· 75%이상~95%미만	· 55%이상~75%미만	· 35%이상~55%미만	· 35%미만
1점	2점	3점	4점	5점

4

혁신성 및 핵심역량 평가 (10점)

가. 기술(연구)개발 투자비율(5점)

- 최근 3년('22년~'24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으로 점수 배분
 - 연구개발비 비중 계산식 : (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
 - * (연구개발비) 표준대차대조표의 개발비, 표준손익계산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제조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 없는 경우 0점 처리)
- 평가기준

· 없음	· 0.1%미만	· 0.1%이상~0.4%미만	· 0.4%이상~0.7%미만	· 0.7%이상~1%미만	· 1%이상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나. 핵심 제품·기술보유(5점)

- 평가기준 (핵심 제품·기술보유 개수)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 평가항목 및 증빙서류 ※ 단순 시험성적서는 불인정, 특허 중인 디자인 상표등록 제외

평가항목	증빙서류(유효기간 내의 인증서)
· NEP, NET 기술개발제품 인증	· 인증기관장의 인증서 사본
· JIS, UL, CE, CCC FDA 등 국제 인증	· 해당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해외특허증 인정)
· ISO관련, HACCP, TL9000 등 인증	· 인증기관장의 인증서 사본
· KS, Q, GD마크, 기타 국내품질 인증	· 인증기관장의 인증서 사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보유	· 인증기관장의 해당분야 등록증 사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 세계일류상품 선정 또는 생산기업 지정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사본 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사본
· 장영실상 수상	· 상장 사본(※ 포상자 또는 팀을 배출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제품/서비스/상품기술/품질/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급(시장) 이상 수상	· 상장 사본

5

근무여건 평가(10점)

가. 직원 복리후생 실천(10점)

- 직원 복리후생 평가항목 중 실천한 항목 수별로 점수 배분
- 평가기준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이상
2점	4점	6점	8점	10점

- 평가항목 및 증빙서류

평가항목		증빙서류
· 복지시설 운영 (1개 이상 해당)	구내식당	사진 및 식자재 구입 영수증 등
	기숙사	사진 및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등
	휴게실	사진
	운동시설	사진(사무실 내 탁구대 1대 설치 등은 불인정)
· 임직원 학자금, 자기계발비 지원		최근2년 이내 학자금 혹은 자기개발비(학원비, 학비) 지급 내역 및 사규·내부방침(행사 등에 의한 일시적 지급 불인정)
· 유연근무제, 육아지원제도 운영		관련제도·결재문·사규·내부방침 등
· 임직원 동호회 등 취미활동 지원		최근2년 이내 동호회 활동비 지급내역 및 사규·내부방침 (행사 등에 의한 일시적 지급 불인정)
· 임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관련제도·결재문·사규·내부방침 등
· 노동조합(노사협의회) 운영 등		관련제도·결재문·사규·내부방침 등

6

발전 가능성(10점)

가. 모범장수기업 선정 부합성 및 사업 발전 가능성(10점)

- 장기간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대표자의 경영역량(인사·회계·노무 등) 및 기업 발전 의지, 기존 사업 외 사업 확장 계획, 관련 지역, 업계 등 평판

가.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10점)

- 지역사회·지역경제 및 지속가능성 추진 노력, ESG*, 넷제로(NetZero)** 추진 계획 등

* ESG :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

** 넷제로(NetZero) : 배출하는 CO2량과 제거하는 CO2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탄소중립)

붙임 4 지식서비스업 중 지원대상 업종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
○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47
○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 출판업(불건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8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59
○ 방송업	60
○ 전기 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3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
○ 여행사업	7521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 사무지원서비스업	7591
○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출처 :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지식서비스업